

기술원 분리수거장 펜스 설치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목 차
① 공사설명서
② 공사시방서

2026. 7.

1 공사설명서

1. 공 사 명 : 기술원 분리수거장 펜스 설치 공사

2. 공사목적

본 과업은 기술원 분리수거장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외부 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3. 공사범위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분리수거장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5. 공사내용 : 펜스 신규 설치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 펜스 설치	- 기초작업 (앙카 삽입 및 구조물 설치) - 펜스 설치	총 26m이내

6. 공사 시 제출서류

가) 착수시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 1) 공사 착공계 2부.
- 2) 현장대리인계 2부.
- 3) 공사 예정공정표 2부.
- 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2부.

나) 준공시 : 계약 시방서에 요구하는 사항을 완료하고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준공계 2부.
- 2) 하자보수보증서 1부.
- 3) 준공사진첩 : 파일 1부 및 서면 2부.
- 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2부.

2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기술원 분리수거장 펜스 설치에 적용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과업에 포함된 펜스 설치에 적용하며, 규격은 내역서에 따른다

3. 규격

가. 펜스 : H2,000 × W(1,200 ~ 2,000)mm(총 26m이내)

나. 디자인 : 타공형(분체 도장)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공사 공종 관련 면허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제작 및 설치

- 가. 펜스 설치 시 수직도와 수평도를 유지하고, 고정 앵커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현장 여건에 따른 보완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시험 및 검사

-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 중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 5)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들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6)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 7) 작업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시공 전 시공방법을 협의하여 지시에 따

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

- 1)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 2)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 3)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

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0.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지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 사진촬영에 적극 협조한다.